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대비표

1. 개정시행일: 2017. 4. 21

2.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호 삭제에 따른 호 체상(표준약관 적용)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 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 입·출금내역 등)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호 삭제에 따른 호 체상(표준약관 적용)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내용 변경 및 호 신설 (표준약관 적용)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8조(이용시간)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이용시간)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항 내용 변경 (표준약관 적용)
제9조(수수료) 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본점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일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립니다.	제9조(수수료) ② 은행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항 내용 변경 (표준약관 적용)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해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채, 건문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 6 (내용생략)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 5 (내용생략)	조 명칭 변경 (표준약관 적용) 호 삭제 및 체상 호 내용추가 (표준약관 적용) 호 체상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항 내용 변경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표준약관 적용)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조 신설 (표준약관 적용)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항 신설 (표준약관 적용)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호 신설 (표준약관 적용)
제28조 ~ 31조 (내용생략)	제29조 ~ 32조 (내용생략)	조 체하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 신설 (표준약관 적용)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31조(준거법)	**제33조(준거법)**	조 체하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적용